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19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이원택 · 윤준병 · 주철현
오세희 · 허 영 · 임호선
문금주 · 장철민 · 임미애
김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부족과 현행법상 전기설비 이용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민간 영리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전력계통의 접속을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4호 중 “없을 것”을 “없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의 차질 발생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5항제4호 단서의 발전사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기설비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